

대구교육권리헌장(안)

(2011.5.27)

제1장 총 칙

학교는 교육 공동체의 소중한 만남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 행정기관, 지역 사회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소망스러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학생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학생은 인간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가지며, 이에 상응하는 성실한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 주민과 함께 학생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 시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숭고한 역할을 다할 것이다.

교원은 전문직으로서 교직을 성실히 수행하며, 학생 및 교육 관련 주체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한다. 수업 활동과 생활 지도 활동 등을 통하여 교육의 가치와 행복을 느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랑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그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이다.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며, 공교육의 책임을 국가에 위임한 자이다. 또한 학생 교육에 대한 동반자로서, 학생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교육 활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정신과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교육 주체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각종 헌장 및 조례와 대구광역시 교육의 특색을 담아 이 헌장을 제정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절 차별받지 않을¹⁾ 권리

1)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제1조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민족, 국가, 출신 지역,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²⁾,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 성향³⁾, 병력, 징계, 성적(成績)⁴⁾ 등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2조 학생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며 침해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⁵⁾

제2절 양심·종교의 자유

제3조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⁶⁾를 가진다.

제4조 학생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을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⁷⁾

제5조 학생은 특정 종교 의식 참여 및 종교 과목의 수강을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⁸⁾

제6조 학생은 타인의 양심과 종교를 존중하여야 한다.⁹⁾

제3절 학습에 관한 권리

제7조 학생은 법령¹⁰⁾과 학칙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권¹¹⁾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아동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뉴욕권리헌장 등에 사례가 있음

2) 학생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위탁교육기관(단기)지정 및 교육 지원 계획(창의인성교육과 -6944, 201012.30) : 학생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단기위탁교육기관(혜림원)지정, 위탁교육 기간(3개월 이내, 단 1회 연장가능)을 수업일수로 인정, 성적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준용

3) 동성애 또는 양성애 성향 등

4) 성적(成績)으로 교육 활동 특히 학생회 임원 자격 등에 제한을 둘 수 없다. : 인권위는 ...인천 교육청의 보고를 근거로 전부 시정돼 시정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5)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4조 모든 아동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7) ‘양심에 반하는 내용’이란 학생이 인정하지 않음에도 상벌을 전제로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문화선진화방안(2011.1 안) ‘학칙준수서약식’을 권장하고 있음.

8) 학교는 학생이 특정 종교 행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대체 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9) 학생들 또한 소속 학교의 종교적 건학 이념과 목적을 존중하고, 타인의 양심과 종교에 대해 비난이나 비방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4절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9조 학생은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¹²⁾

제10조 학생은 자유롭게 선택한 교육 활동에 대하여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¹³⁾

제5절 의사 표현의 자유

제11조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¹⁴⁾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학생은 교지 등 언론 활동,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¹⁵⁾

제13조 학생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거나 자의적인¹⁶⁾ 간섭 또는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¹⁷⁾

1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개정 2011.3.18>

11)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정규수업 이외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교육 활동과 심야 교육 활동은 금지할 것,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운영은 희망자에 한하여만 실시할 것, 학생의 희망원과 부모의 동의서는 반드시 비치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청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기관인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3)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 또한 정규 교과와 자신이 선택하여 참여한 자율 학습 및 보충학습에 참여할 경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수업 및 교육 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학칙에 정해진 징계를 감수하여야 한다.

14)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 모든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지니며, 국경과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접하고, 전달한 권리를 가진다.

15) 학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벽보게시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나 의견방을 개설하여야 한다.

16)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

17)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4조 학생은 타인의 의사를 편견 없이 경청하여야 한다.

제15조 학생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절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권리

제16조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¹⁸⁾

제17조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학교 규정¹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절 사생활의 자유

제18조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할 경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19조 학생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개인적인 기록물을 보여주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학생은 타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받을 수 있다.²⁰⁾

제21조 학생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²¹⁾에 의해서만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받을 수 있다.

제22조 학생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개인 소지품을 학교에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한다.

제8절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23조 학생은 개인적인 정보²²⁾를 보호받아야 한다.

제14조 모든 아동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아동은 평화로운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18) 두발의 경우 길이 및 형태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 쟁점사항으로 설문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형태(파마, 염색 등)는 재논의 가능함.

19)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1.3.18>

20)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청소년헌장 청소년의 권리> 그러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휴대폰이나 소지품에 대해 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1) 휴대폰 소지 규정을 각 학교 사정에 따라 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24조 학생은 교외에서 이름표 착용을 강요받지 말아야 한다.²³⁾

제25조 학생은 타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개인적인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²⁴⁾

제9절 휴식을 취할 권리

제26조 학생은 전인적인 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²⁵⁾를 가진다.

제10절 학교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27조 학생은 신체적·언어적 폭력²⁶⁾ 및 체벌²⁷⁾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학생은 타인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²⁸⁾

제11절 건강에 관한 권리

제29조 학생은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여학생은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²⁹⁾ 불이익을 받지 않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학교는 학생의 이름표를 붙이고 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이름표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4) 학생들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이나 글로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25)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6) 학생들 간의 폭력을 포함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 유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 학대를 막고,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체벌, 언어 폭력, 강압적 태도 등 비교육적인 훈육·훈계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학생 간 쌍방향으로 소통·공감하는 학교 문화가 필요함.<학교문화선진화방안 2011.1>

2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3.18>

28) <청소년헌장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헌장 청소년의 책임>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29) 실제 생리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제출은 불필요하다. 2006년 1월 : 교육부 생리결석을 출석으

을 권리를 가진다.

제31조 학생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교원에게 알려야 한다.³⁰⁾

제12절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

제32조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³¹⁾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3조 학생은 학교 시설 및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절 급식에 관한 권리

제34조 학생은 안전하고 균형 잡힌 먹을거리³²⁾로 조리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학생은 타인의 식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절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로 인정. 생리로 인한 결석은 월1회에 한하며 생리결석 시 출석인정 근거 규정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생리결석 시 출석인정 근거 규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호, 별지 제8호 출결상황관리, 2. 결석 나.(6)]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 성적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해서 시행한다. 기준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80%~100% 인정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중학교 100%, 고등학교 80%로 할 것을 예시.

30) 학생은 자신의 선천적 질환이나 질병을 교원에게 알려야 한다.

31)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는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 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2) 친환경적이며, 각 군의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재료로 식단이 구성되어야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 3(영양교사의 배치기준) ①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 1인을 둔다. 학교는 급식 재료, 급식 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타 교육청에 비해 직영 급식 비율이 높으며, 의무교육과정 완성을 위해 무상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36조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³³⁾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학생은 타인의 문화 활동을 존중³⁴⁾하여야 한다.

제15절 학생 복지에 관한 권리

제38조 학생은 적성 발견, 진로 탐색 등 자기계발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³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학생은 학습 부진³⁶⁾,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 이탈 등 각종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³⁷⁾

제40조 학생은 각종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하여 상담 등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³⁸⁾하여야 한다.

제16절 소수 학생의 권리

제41조 빈곤, 장애, 결손 가정, 다문화 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은 그 특성에 따라 필요한 권리³⁹⁾를 보장받고,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⁴⁰⁾

33)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4) 행사나 공연 관람 시 기초 질서 및 관람 예절을 지켜야 한다.

35) 학생은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이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36)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동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7>

38) 학생은 요구한 상담이나 각종 지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3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②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부자유자에 대하여 당해 학교군내의 학교 중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의 범위·입학 방법과 절차 및 지체부자유자의 인정방법은 교육장이 정한다.

40)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② 교육 내용·교육 방법·교재 및 교육 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며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제17절 자치활동⁴¹⁾의 권리

제42조 학생은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⁴²⁾

제43조 학생은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 소집,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받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⁴³⁾받지 아니 한다.

제44조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치 활동에 임해야 한다.

제18절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45조 학생은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⁴⁴⁾

제46조 학생은 학교 규칙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 자치 기구를 통하여⁴⁵⁾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 학생은 제·개정된 학교 규칙을 준수⁴⁶⁾하여야 한다.

제19절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48조 학생 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또는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⁴⁷⁾

-
- 4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4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43) 학생회임원 선출 시 성적으로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44)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45)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46) 교육기본법 제12조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권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들을 수 있다.” “제안 할 수 있다.”를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로 표현함.

제20절 청구 및 청원권

제49조 학생은 인권 침해에 대하여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0조 학생은 상담, 조사 등의 청구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1조 학생은 인권 침해에 관한 청구 및 청원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절 정보에 관한 권리

제52조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⁴⁸⁾할 수 있다.

제53조 학생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54조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절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⁴⁹⁾

제55조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는 명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6조 학생에 대한 징계는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⁵⁰⁾

48) 교육기본법 제26조의 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4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9, 2011.3.18>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1.3.18>

5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제57조 학생은 학교 규칙에 의해 징계 받을 경우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교원의 권리와 책임

제1절 수업에 관한 권리

제1조 교원은 교육자로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육 활동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⁵¹⁾

제2조 교원은 교육 활동 중 학습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할 수 있다.<신설 2011.3.18>

④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3.18>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 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3.18>

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3.18>

51) ‘수업에 관한 권리’는 교원이 그 어떠한 부당한 요구 없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교원의 본질적인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육 행정 기관은 교원이 부당한 요구 없이 자유롭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다음의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59-2조의 2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 제31조의 5(학생의 권리보장 지원)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의 범위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의 범위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항, 3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 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 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제3조 교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⁵²⁾

제2절 학문의 자유를 누릴 권리

제4조 교원은 가르치는 일에서 학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제5조 교원은 교육 내용 선택, 교육 방법 결정, 평가 및 학생 지도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⁵³⁾

제6조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⁵⁴⁾

52) 교원 본연의 권리가 가르치는 일이라면, 학습자인 학생 본연의 권리는 배우는 일이다. 따라서 교원은 교육 활동의 과정에서 그 대상인 학습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 행정 기관, 학교, 교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 소수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다음의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 ① 국가공무원법 59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기본법 12조 1항 -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2항 - 교육 내용·교육 방법·교재 및 교육 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③ 초·중등교육법 18-4조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 인권 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53) ‘학문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교원이 가르치는 일을 포함한 교육 활동의 과정에서 학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교육 활동의 과정에서 교원이 교육 내용의 선택, 교육 방법의 결정, 평가와 학습자 지도에서 전문가로서의 안목과 윤리 의식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권리는 다음의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 ① 교육기본법 12조 3항 -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육기본법 14조 1항 -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54) 교육은 학습자의 총체적 성장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성장 여부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교원은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다음의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 ① 교육기본법 14조 2항, 3항
-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 연구자로서의 권리 → 교육 연구자

제7조 교원은 교육 과정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교원은 교육 연구자로서 연구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한다.⁵⁵⁾

제9조 교원은 양심과 법규에 따라 연구하여야 하며,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⁵⁶⁾

제4절 건강에 관한 권리

제10조 교원은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교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⁵⁷⁾

-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 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5) ‘교육 연구자로서의 권리’는 교원이 연구자로서 새로운 교육 과정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는 교육 과정과 각종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교원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연구자로서 교원이 개발한 각종 연구물(교과서, 학습 자료, 평가 문항 등)의 저작권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다음의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① 교육기본법 12조 3항 -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기본법 14조 1항 -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56) 교원은 교육 연구자로서 양심과 법규에 따라 연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물을 학습자를 가르치기 위하여 교육 활동에 활용할 때,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다음의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59-2조 1항 -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③ 교육기본법 6조 1항 -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기본법 14조 4항 -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57) ‘건강에 관한 권리’는 교원이 건강하게 교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는 교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학습자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다

제5절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

제11조 교원은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관련 법규에 규정된 신분상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12조 교원은 직업적 안정을 위하여 교육 행정 기관 등 사회 제반 기관과 단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⁵⁸⁾

제13조 교원에 대한 징계는 명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14조 교원은 징계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⁵⁹⁾

음의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 ① 교육기본법 27조 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2조 1항 -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 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58)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는 교원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직업적 안정을 위하여 학교나 교육 행정 기관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성실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다음의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 ① 교육기본법 14조 1항 -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② 교육공무원법 43조 - 교원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③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6조 1항 -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2항 -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9) 교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명확하게 규정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교원의 징계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나 교육 행정 기관은 교원의 ‘징계 회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징계 사유에 관한 증거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권리’,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고 스스로 변호하거나 자기가 선택한 대리자로 하여금 변호하게 할 수 있는 권리’, ‘결정 사항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명확히 지정된 기관이나 기구에 소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다음의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 ① 국가공무원법 68조 및 교육공무원법 43조 2항 -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② 교육공무원법 제48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 - 교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

제15조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⁶⁰⁾

제6절 교권을 보호받을 권리

제16조 교원은 교육 관련 법규에 의하여 교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교원은 육아와 교육 활동을 조화롭게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⁶¹⁾

제18조 교원은 무고한 행위로 인해 교권이 침해받을 경우 교육 행정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⁶²⁾

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 ③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6조 1항, 2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④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7조 1항, 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 60) 교원의 지위와 품위는 교원에게 달려 있음을 깨닫고, 교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드높여 품위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다음의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 ① 국가공무원법 63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육기본법 14조 2항-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61) ‘교권을 보호받을 권리’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여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 및 교육 행정 당국은 교원들이 교권을 자각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습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권의 조화로운 실현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나 분쟁이 생길 경우 자율적·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원은 육아와 교육 활동을 조화롭게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도 가진다. 특히 학교 및 교육 행정 당국은 가정의 책임을 가진 교원이 육아와 교육 활동을 함께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62) 창의인성교육과-5260 교원안전망 구축 내용 안내 2010/12/06
예방적 안전망 : ◦교권침해 예방,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학교 내 자율적·교육적 해결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도, ◦분쟁 관련 교원 보호 : 「긴급전화」 제도,
보전적 안전망: ◦학생 안전사고 보상 서비스 : 학교안전공제회, - 사고학생에 대한 보상, -

제19조 교원은 교권 침해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교단 복귀를 위한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⁶³⁾

제20조 교원은 교육 관련 법규에 규정된 교육자로서의 권리를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⁶⁴⁾

제7절 학교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⁶⁵⁾

합의금 등 교원 부담 비용 지원, - 교직원에 대한 소송·법률 지원, ◦ 교직원 무료법률상담서비스,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부가적 안전망 : ◦ 교원의 경제적 애로사항 지원, - 전세금·자녀결혼자금 저리 대여, - 사망조위금 지급, ◦ 장기 별거 교원의 인사고충 지원 : 시·도간 인사 교류 확대

63) 교원이 학교 내·외에서 교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학교 및 교육 행정 기관은 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을 위한 전문 상담 제도나 학부모 등의 무고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지원할 수 있는 교권 전담 변호인단 구성 및 운영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이나 침해당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의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 전보 제도’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다음의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6조 1항, 2항, 3항, 4항 -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각 급 학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

②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7조 3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64)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교권을 지키기 위한 교원들의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학교, 교육 행정 기관, 학생,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교원들이 타협하고 순응할 것이 아니라, 교원 스스로 교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다음의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59-2조의 2항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공무원법 43조 -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65) ‘학교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학교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인 교원이 학교의 공동 사무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교원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을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교의 정당한 공동 사무에 협력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가진다. 이러한

제21조 교원은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교원은 학교의 정당한 공동 사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절 정보에 관한 권리

제24조 교원의 교육 저작권⁶⁶⁾ 등 개인 정보는 보호받아야 한다.

제25조 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에 관한 정보를 적법한 절차와 수단⁶⁷⁾에 따라 수집·처리·관리하여야 한다.

제9절 전문적 단체 조직 및 참여 권리

제26조 교원은 각종 전문적 단체를 조직하여 교직 전문성을 계발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⁶⁸⁾

권리와 의무는 다음의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 ①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기본법 13조 2항 -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66) ‘정보에 관한 권리’는 교원에 대한 개인 정보와 교육 활동의 과정에서 교원이 개발한 교육 자료에 대한 교육 저작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10월 법원은 “학교에서 교사가 출제한 중간, 기말 고사의 문제들을 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한 판례도 있다. 이와 동시에 교원은 교육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적법한 절차와 수단⁶⁷⁾에 따라 수집, 처리,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지닌다.
- 67) ① 국가공무원법 60조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68) ‘전문적 단체 조직 및 참여 권리’는 교원들이 교직의 전문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각종 전문적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교원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기르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섭·협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다음의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 ① 교육기본법 15조 1항 -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제4장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제1절 의견을 제시할 권리

제1조 학부모는 학생 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⁶⁹⁾

제2절 교육 활동 내용을 공지 받을 권리⁷⁰⁾

제2조 학부모는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기준 등에 대해 공지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안건 자료, 회의 일정, 회의 결과 등을 공지 받을 권리가 있다.⁷¹⁾

제4조 학부모는 학교에서 시행되는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설문 결과와 활용에 대해 공지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학부모는 장학생, 수상, 특별 프로그램 수강, 추천 학생 등의 학생 선발 기준에 대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 자치 단체와 중앙에 교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 ②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11조 1항 -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섭·협의를 한다.
- ③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12조 -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를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 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 과정과 교육 기관 및 교육 행정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를 대상이 될 수 없다.

69) 교육기본법 제13조 (보호자)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70) 공지란 홈페이지 공개 등을 포함한다.

7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지 받을 권리가 있다.

제3절 학생 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권리

제6조 학부모는 학교 내에서의 따돌림, 폭력, 무단결석, 부적응, 급식 거부 등 학생 신상의 중요한 정보⁷²⁾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학부모는 학생의 질병, 장애, 신체적·정서적 특이 사항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에 알려야 한다.⁷³⁾

제4절 학생 상담에 관한 권리

제8조 학부모는 학생 교육과 관련된 상담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학부모는 학생 교육과 관련된 상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5절 시정을 요구할 권리

제10조 학부모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학교 규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⁷⁴⁾

제11조 학부모는 학교에서의 비인격적 대우, 차별 등 인권에 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⁷⁵⁾

제12조 학부모는 학생 체벌, 방과후학교 강제 수강 등 학생의 인권이나 자유 선택권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⁷⁶⁾

제13조 학부모는 교육과정 운영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⁷⁷⁾

72)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 중에 학부모로서 교육상 당연히 알아야 할 사안에 대해 통지 받는 것을 의미한다.

73) 생활지도에 참고해야만 하는 중요한 개인의 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을 의미한다.

74) 비록 학교규칙이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인권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학부모는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는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75) 교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성적순으로 기숙사 등의 학교시설 사용의 우선권을 주는 등의 학교 내부 방침 등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76) 예컨대 학부모가 체벌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학생의 의사와 반하여 강제로 자율학습, 방과 후 학습을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77)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수업내용이나 교육적 정당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제14조 학부모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위배되는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⁷⁸⁾

제15조 학부모는 자녀의 종교적 자유가 침해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학부모는 강제성 모금, 불법 찬조금 등 부조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학부모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의 침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6절 무기명을 보장받을 권리

제18조 학부모는 의견 제시, 이의 제기, 시정 요구 등을 할 때 무기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⁷⁹⁾

제19조 학부모의 무기명을 보장받지 못한 설문 및 평가 결과는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⁸⁰⁾

제7절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권리

제20조 학부모는 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1조 학부모는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단의 학교 급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2조 학부모는 학생이 학교에서 동료 학생, 교원, 외부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⁸¹⁾

제23조 학부모는 장애, 다문화, 부적응 등의 소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78) 예컨대 학교의 정상적인 체험활동, 실험실습 등을 입시와 관련이 없다고 줄이라고 요구한다거나, 사설학원 모의고사 실시 횟수를 늘리라고 한다거나 하는 식의 요구를 학부모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79) 학부모들의 시정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받기 위한 권리이다. 학부모의 권리행사로 인해 학생에 대한 유, 무형의 불이익을 염려하게 되는 학부모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한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즉 권리행사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는 학생 교육과 관련한 학부모의 설문, 의견제시, 이의제기, 시정요구 등에 국한 되는 것으로 교육과 무관한 개인에 대한 음해 등의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80) 수업참관록이나 설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이름을 적게 하여 소신 있게 답할 수 없는 조건의 경우 등을 말한다.

81) 최근 교내에서 학부형으로부터 학생이 폭행당한 경우를 포함하여 동료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일 등이 발생하는데, 학교는 언제라도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필요한 학생 보호 조치를 다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24조 학부모는 교복 등 교육 소비재 공동 구매와 관련하여 학교에 편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학부모는 학부모회 등의 소집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에 편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절 민주적 학교 공동체를 위한 권리

제26조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유무형의 특별대우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⁸²⁾

제27조 학부모는 금품 향응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요구받았을 경우 거절할 책임이 있다.⁸³⁾

제28조 학부모는 자원 봉사를 할 경우 자발적 의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29조 학부모는 불필요한 자원 봉사를 자제하여야 한다.⁸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헌장(가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2) 학생 개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공정성에 위배되는 특별한 대우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 봉사 등을 이유로 학생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83) 기부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을 모으거나 향응을 주선해서도 안 되며, 이의 제공을 권유받았을 경우 거절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학생이 학생회 임원이라는 이유로, 혹은 학부모 자신이 학부모회 임원이나 학교운영위원이라는 이유로 기부금품을 제공해서도 안되며, 기부금품을 모금해서도 안된다. 또한 학생의 수상을 이유로 기부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학생에게 신뢰로 가득찬 학교환경을 제공하고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부모는 기부금품 제공과 모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 제공을 요구받았을 경우 이를 거절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84)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은데도 학부모의 과도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학부모의 치맛바람으로 이어지고 학교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